

접 수	의정종합지원 - (20 . . .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1 년 10 월 12 일

청 원 인

성 명 :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이태호, 류제성 (인)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전화번호 : 02-725-7104 (휴대전화 010-2715-5180)

소 개 의 원 : 김 부 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센터장	차 장	총 장	

## 청원 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사무국)
	성명 :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이태호, 류제성
건명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소개년월일	2011년 10월 12일
<p>소개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정치관계법 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치현안에 밀려 정치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특히 각종 공직선거법의 규제조항에 가로막혀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권리 보장 방안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li> <li>- 유권자가 선거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고,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또한 풍부한 토론과 의견 교류는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정치적 대표성의 위기'와 '정치 무관심'을 극복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관권 금권 선거는 철저히 막더라도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li> <li>-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해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짧은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상시적으로 제약당할 뿐 아니라, 허용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매우 제한된 방식으로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선거법의 규제는 정치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과도한 규제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SNS 등 의사소통 수단의 시대적 발전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li> <li>- 본 의원은 다가온 양대 선거와 그 이후의 여러 정치 공간에서 국민들이 정치의 주체로 서고, 그 속에서 정당과 정치인이 신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본 &lt;유권자 자유&gt;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li> </ul>	

소 개 의 원                      김 부 겸                      (인)

【별첨 1】

## 청원인 서명날인부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1	이 태 호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사무국)		
2	류 제 성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별첨 2】

##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1	김 부 겸		민주당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 회	경기 군포시	

##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청원

### 「제안이유」

○ 1994년 제정된 현행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것이었음. 과거 우리나라의 선거에서 관권, 금권 선거 등 부정선거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시켰던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며, 여전히 일부에 의해 자행되는 관권, 금권 선거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며 경계해야 할 악습임.

○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한다는 취지와 달리, 부정선거를 막는다는 구실로 ‘엮만 묶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무엇보다 현행 규제 중심적 선거법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새롭게 등장한 의사소통수단을 반영하지 못한 채 유권자들의 높아진 정치 참여 욕구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음.

○ 대표적 독소조항인 선거법 93조 1항의 경우, 선거 180일 전부터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의사표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끊임없이 위헌 논란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후보자비방죄, 인터넷 실명제, 시설물 설치 금지 등 각종 규제 조항들은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건전한 비판과 정책 형성 활동을 제약하고 있음. 이와 같은 규제 중심적 선

거법의 문제는 지난 2007년 대선 시기의 인터넷 UCC물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과 2010년 지방선거 시기의 트위터 단속을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른바 선거쟁점(4대강 무상급식)'을 통한 특정 정책 과제의 단속으로 나타난 바 있음.

○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가 대의기구를 형성하는 핵심적 수단임. 따라서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이 보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 간에 자유로운 의사 표현 행위를 통해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정보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 선거법과 같이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 조항들이 존치하는 한, 올바른 후보와 정책을 선택하는 활동은 불가능함.

○ 선거의 공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그러나 선거에서 공정을 강조하는 이유는 불공정한 선거로 인해 후보자간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어 선거의 자유가 침해되고, 이로 인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선거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이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선거의 공정성은 선거 비용 통제 등의 방법으로 정당 후보자 간의 공정한 규칙을 마련함으로써 확보되어야 하며, 유권자의 의사 표현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됨.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참여를 제약함으로써 전혀 공정하지 않은 선거, 정책 경쟁이 불가능한 선거를 만들고 있음. 오히려 돈을 묶는 데 사용되어야 할

인력과 비용이 유권자의 참여를 단속하고 제한하는 데 사용됨으로써 본말이 전도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이에 주권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유권자의 대의 기구 형성이라는 선거의 본래적 기능을 고려하여, 유권자의 참여를 제약하는 현행 규제 중심적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음. 무엇보다 유권자가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 즉 후보자와 정당을 지지하고 반대할 권리, 원하는 정책을 호소할 권리, 마음껏 투표를 권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 시기에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를 규제해온 주요 독소 조항들을 개정하고자 함.

○ 한편 선거 전에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선거일에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음. 무엇보다 생업 등으로 인해 선거일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며, 휴무가 아닌 재보궐의 경우 투표권 보장은 더욱 문제임. 이에 따라 투표시간 연장, 부재자투표소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투표를 통해 발현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대하여 참정권 보장의 폭을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선거운동' 정의 규정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음. (안 제58조제1항)

나. 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기간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였음. (안 제59조, 안 제82조의 4제1항)

다. 미성년자 선거운동 제한 규정 및 외국인 선거권자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미성년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와 선거권이 보장된 외국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를 보장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60조제1항)

라. 인터넷 언론사에 실명제를 강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여론수렴과 공론형성이라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 침해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도록 하였음. (안 제82조의6)

마. 선거 180일 전부터 온 오프라인에서 후보자,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음. (안 제93조제1항)

바. 선거 시기 연설회, 집회, 행렬, 서명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설물의 경우 광범위한 기간 제한을 축소하고,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만 규제하도록 하였음. (안 제90조, 안 제101조, 안 제103조제3항, 안 제105조, 안 제107조)

사.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현행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하도록 하되,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통해 사실상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평가를 금지하고 있는 후보자 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음. (안 82조의4제2항, 안 제110조, 안 제251조)

아.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위임된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요건을 공직선거법에 명시하고 그 요건을 완화하였음. (안 제148조제2항)

자.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9시로 연장하였음. (안 제155조제1항, 제2항, 제5항).

차. 매수및이해유도죄의 처벌범위를 엄밀히 규정하여 투표 독려 행위를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제한하였음. (안 제230조제1항)

카.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사전선거운동위반죄의 경우 포괄성을 배제하고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처벌하도록 한정하였음. (안 제254조제2항)

위와 같이 청원합니다.

청 원 인

성 명 : \_\_\_\_\_ (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82조의4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제6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단, 제15조(선거권) 2항 3호에 선거권이 보장되는 자는 당해 선거에 한해 제외

제6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82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82조의4제2항을 삭제한다.

제82조의6을 삭제한다.

제9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9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3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01조를 삭제한다.

제10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5조를 삭제한다.

제107조를 삭제한다.

제110조를 삭제한다.

제14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안의 읍·면·동의 구역안에 거소를 둔 부재자투표예상자가 5백인을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재자투표기간 중 부재자투표예상자가 투표를 마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투표관리관을 지정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읍·면·동안에 하나의 부재자투표소만으로는 부재자투표자(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투표를 마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인 이상의 투표관리관을 지정하여 각각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읍·면·동안의 부재자투표예상자가 5백인미만인 때에도 지리·교통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구·시·군 위원회의 의결로 투표관리관을 지정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9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제15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는 부재자 투표기간중 매일 오전 10시에 열고 오후 9시에 닫는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부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제15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오후 9시까지 관할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제2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제7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연

설□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81조제1항□제82조제1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대담□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제251조를 삭제한다.

제25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반상회,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선거운동</p> <p>제58조(정의 등) ①이 법에서 "<u>선거운동</u>"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li> <li>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li> <li>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li> <li>4. 통상적인 정당활동</li> </ol> <p>② (생략)</p> <p>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li> </ol>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선거운동</p> <p>제58조(정의 등) ①이 법에서 "<u>선거운동</u>"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 _____</p> <p>_____.</p> <p>1~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9조(선거운동기간)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1~ 2. (현행과 같음)</p>

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삭제

3.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9. (생략)

② (생략)

3. 제82조의4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

①\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 \_\_\_\_\_단, 제15조(선거권) 2항 3호에 선거권이 보장된 자는 당해 선거에 한해 제외

2. <삭제>

3~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2.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
3. 문자(문자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방법.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정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하며,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

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_\_\_\_\_

\_\_\_\_\_ <기간 삭제>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3. (현행과 같음)

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⑥ (생략)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

② <삭제>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삭제>

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②정당이나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정보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정보

등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서 정보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정보등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⑦ 인터넷언론사는 정당 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등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  
\_\_\_\_\_  
\_\_\_\_\_

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진열 게시 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마스크 트 등 상징물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

---

---

---

—. <이하 삭제>

1-3. (현행과 같음)

② <삭제>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 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 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

① <삭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 ~ ③ (생략)

제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 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 시국강연회 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①삭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 <삭제>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제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 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④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

⑤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 ①누구든

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2.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3.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지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조(서명 날인운동의 금지) 누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 <삭제>

제107조(서명 날인운동의 금지)

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  
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누  
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  
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 비속  
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 직  
업 경력 등 재산 인격 행위 소속  
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  
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  
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 제10장 투표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

- ① (생략)
- ②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구역안의 부재자투표예상자의 수  
와 분포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재자투표  
기간중 부재자투표예상자가 투표

<삭제>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삭제>

#### 제10장 투표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

- ① (현행과 같음)
- ② \_\_\_\_\_  
— 읍·면·동의 구역안에 거  
소를 둔 부재자투표예상자가 5백  
인을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재자투표기간 중 부재자투표예

를 마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투표관리관에게도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제155조(투표시간) ①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상자가 투표를 마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투표관리관을 지정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읍·면·동안에 하나의 부재자투표소만으로는 부재자투표자(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투표를 마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인 이상의 투표관리관을 지정하여 각각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읍·면·동안의 부재자투표예상자가 5백인미만인 때에도 지리·교통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구·시·군 위원회의 의결로 투표관리관을 지정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55조(투표시간) ①—————  
—————오후 9시에—————  
—————  
—————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②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는 부재자투표기간중 매일 오전 10시에 열고 오후 4시에 닫는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부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③ ~ ④ (생략)

⑤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 관할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제16장 벌칙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_\_\_\_\_  
\_\_\_\_\_  
\_\_\_\_\_  
\_\_\_\_\_.

② \_\_\_\_\_  
\_\_\_\_\_  
\_\_\_\_\_  
\_\_\_\_\_ 오후 9시에 \_\_\_\_\_  
\_\_\_\_\_  
\_\_\_\_\_.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_\_\_\_\_ 오후 9시까지 \_\_\_\_\_  
\_\_\_\_\_  
\_\_\_\_\_.

제16장 벌칙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_\_\_\_\_  
\_\_\_\_\_  
\_\_\_\_\_

1.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_\_\_\_\_  
\_\_\_\_\_  
\_\_\_\_\_



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 ①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 뉴스통신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 좌담회 토론회·향우회 동창회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 ① (현행과 같음)
- ② —————이 법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선전시설물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 뉴스통신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반상회,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